

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제1999-63호 1999. 7. 23.

제 정 취 지

-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가 시행되고 있는 바,
- 각 평가제도가 별도로 시행됨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1999년 2월 26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반영, 기존의 각 영향평가제도의 내용을 포괄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 요 골 자

- 도시의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등 환경·교통·재해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규정
 -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시·도 조례로 평가대상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영향평가는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되, 분야별 평가항목은 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이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도록 함.
- 평가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

건을 수렴하도록 하되, 교통분야만을 평가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자는 평가서 및 평가서초안 등의 작성을 영향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평가대행자는 그 업무범위에 따라 소관부처(환경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에 등록하도록 함.
- 평가서가 작성규정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보완 또는 재작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서의 부실작성으로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관계부처는 협의내용을 사업승인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승인기관이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내용 상호간에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를 거쳐 사업승인기관에 최종협의내용을 통보토록 함.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제1조(목적) 이 법은 영향평가대상사업(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인구에 미칠 영향을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향평가”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

립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분석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 나.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애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 다. 당해 사업이 홍수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강구

라. 당해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그 처리대책 강구

2. “사업자”라 함은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평가분야”라 함은 자연환경, 생활·경제환경, 교통, 재해, 인구 등 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하여야 할 분야를 말한다.

4.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각 평가분야별로 각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가. 자연환경, 생활·경제환경 : 환경부

나. 교통 : 건설교통부, 환경부

다. 재해 : 행정자치부

라. 인구 : 건설교통부, 환경부

제3조(국가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도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교통·재해·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등) ①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으로서, 각 사업별 평가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건설

5. 도로건설

6. 수자원개발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8. 공항의 건설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10. 매립 및 개간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

12. 체육시설의 설치

13. 산지의 개발

14. 특정지역의 개발

15.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16. 기타 환경·교통·재해·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

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로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영향평가분야 및 항목) ①영향평가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영향평가의 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행정자치부, 환경부, 건설교통부의 공공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평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중점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평가항목을 제출받아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환경영향평가기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중 환경에 관한 평가항목의 평가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으로 한다.

제7조(영향평가대상지역) 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되는 지역으로서 예측·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범위가 설정된 지역(이하 “영향평가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영향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의 의견수렴) ①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견수렴의 방법·절차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④사업자는 교통분야만을 평가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영향평가의 대행) 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서 영향평가의 실시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영향평가의 실시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중 공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자연환경, 생활·경제환경분야 : 환경부장관
2. 교통, 인구분야 : 건설교통부장관
3. 재해분야 : 행정자치부장관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3조(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무단복제하지 아니할 것
2. 평가서등을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할 것
3. 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조작하지 아니할 것

②평가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평가대행자의 등록증이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지 아니할 것
2. 평가서등의 공정성 및 실효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조건으로 하는 평가업무를 용역받지 아니할 것

제14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①평가대행자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작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하여 부도급한 경우

5.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영향평가대행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7. 등록 후 2년이내에 영향평가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향평가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회(청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영향평가대행계약에 한하여 그 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18조(평가대행실적등의 보고등) ①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평가

대행실적을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평가대행실적 및 행정처분 내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평가서작성비용의 산정기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여 통합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20조(평가서의 협의등) ①사업자중 대상사업 또는 대상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의 장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서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협의

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관계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지출시기 및 협의 요청 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평가서의 보완 또는 재작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등을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8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보완 또는 재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서의 검토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사업계획등이 환경·교통·재해·인구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이라 한다)의 장의 검토의견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전문가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그 심의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회위원회, 지방교통영향심의회위원회를 각각 둔다.

④행정자치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업무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협의내용등의 통보)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평가서의 검토·심의 등

의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기관의 장등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으로부터 통보받은 협의내용 상호간에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받은 환경부장관은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등은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협의내용등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반영하여 사업계획등을 확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련부처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이의신청) ①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등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승인기관의 장등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각각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사업자가 평가서에서 제시한 내용 외의 사항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승인기관의 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

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사항에 관한 처리가 완료된 후 당해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26조(평가서의 재협의등) ①사업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중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등이 사업미착공기간에 있어서의 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인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또는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5조 내지 제10조, 제20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를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 ①사업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계획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승인기관의 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협의내용의 이행의무)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등(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할 사업자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사업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사유 등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협의내용의 관리·감사) ①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이 이행되도록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할 수 있다.

③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환경·교통 또는 재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협의내용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과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다른 법령에 의한 통보등과 함께 할 수 있다.

제31조(사후환경영향조사) ①사업자는 대상 사업의 착공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대상사업·평가항목, 조사기간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재평가) ①환경부장관(승인기관의 장 등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하여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재평가결과에 따라 환경영향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교통분야의 평가 및 심의를 받은 사업등에 관하여 평가 및 심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 및 심의를 받은 후 5년이내에 1차에 한하여 당해 사업등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분야의 재평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사전공사시행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제20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재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등이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협의기준초과부담금) ① 환경부장관

은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등에게 통보한 협의

내용으로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 농도에 관한 기준(이하 “협의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준을 초과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4.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협의기준의 초과정도
2.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 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오염물질의 배출량

5. 기타 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발생된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는 초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5조(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국립방재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또는 국토연구원 등에 위탁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작성·보완
2. 영향평가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여부 평가 및 개발
3. 기타 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6조(비밀엄수의 의무) 평가대행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및 국토연구원의 책임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관련부처의 장은 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8조(영향평가협회) ①평가대행자 및 영향평가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영향평가

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기타 영향평가관련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공동부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협의) 행정자치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공동부령을 제정하거나

나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다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1조(벌칙) 제29조제4항 또는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자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자(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포함한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한 자

②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 또는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4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여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작성을 요구받은 자
2.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4.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자
6.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2.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

영향조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법의 폐지) 환경영향평가법을 폐지한다.

제3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자연재해

대책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심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재심의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등이 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등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제4조(평가대행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 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평가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해당분야의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5조(기존의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협의 또는 심의된 사업은 이 법에 의하여 협의된 것으로 본다.

제6조(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영향평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향평가협회로 본다.

제8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자연재해대책법중 제28조 내지 제32조, 제68조를 삭제한다.

제10조(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 ①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제2조제6호·제7호, 제13조 내지 제19조의2,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9, 제23조제2항·제3항, 제35조의3, 제36조의2 및 제37조제1항을 삭제한다.

②제19조의3제3항중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하고, 제23조제4항중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삭제하며, 제35조중 “평가기관 및 연구원”을 “연구원”으로 하고, 제37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주택회보